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산 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

■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634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출산 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재정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1. 20.
3. 회부연월일 : 2025.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이 출산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출산 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연장

현행	개정안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②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

<u>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u>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u><신 설></u> <u><신 설></u>	<u>분에 따른 기간은</u>----- ----- -----. 1. 「병역법」 또는 「군인사 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 간 2.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 에 대하여 1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출산을 한 경우로서 이법 시 행 당시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개정안은 현행법상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출산한 경우에도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출산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출산으로 응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5년의 응시

기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어, 특히 5년의 기한 내에 출산한 여성 수험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시생과 비교할 때 사실상 응시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모성의 보호는 모성의 건강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인 보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헌법 제36조제2항²⁾에 규정된 ‘모성 보호’의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여 병역의무와 마찬가지로 출산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출산으로 인한 수험기회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법조계 진입 과정에서의 성평등 실현과 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입법 조치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법조 진입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여성의 법조계 진입 확대와 법조계 내 구성원의 다양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임.

- 다만,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 자녀 1명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자녀 수에 따라 응시기간 제외 기간이 누적 적용되는지 여부에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p. 714.

2) 「대한민국헌법」 제36조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출산 상황으로 인해 동 제도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 위임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외에도 “출산을 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구어적 표현에 가까우므로, “출산한 경우”와 같이 보다 명확하고 법령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관계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법무부는 여성의 출산을 배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유산·사산·임신중절 등 다양한 임신 상황과의 형평성 문제와 다테아 출산 시 과도한 응시기간 연장 우려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임신·출산의 양태를 포괄하면서도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여성의 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헌법상 모성보호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자녀 수별 제외
기간의 기준(자녀 1명 ‘한정’인지 ‘당’인지)과 다태아 출산의 처리
방식, 불산입 기간의 기산점과 종료점 등 세부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이 필요하고, 나아가 중대한 질병, 장애,
자녀 양육, 생계유지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060